

「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정지원 의원 외 15명

2. 제안이유

-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2023년 4월 시행됨으로써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경비의 지원,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7조, 제12조, 제14조
 -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, 제3조
- 부서검토: 총무과 의견제출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
-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, 현행조례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범대에 대한 정의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지도 및 감독 조항을 정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- 이를 통해,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효율적인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미신고 단체가 경과규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신고 독려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